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6일, 정춘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6. 3. 1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6.)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춘생의원)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 보고는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양부남위원)

이첩 요청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우선 수사권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상식위원)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출신 직원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구성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의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윤건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중대범죄수사청법안」, 2건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건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통합·조정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서범수위원)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관련된 조항은 정비되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되기 위한 조항은 수정되지 않음.

(윤건영위원) 법안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인 민주적 통제와 중대범죄수사청 독립의 균형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임.

(이상식·채현일위원) 중대범죄수사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함.

(이달희위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우수한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분보장, 수사권 독립, 정치적 중립의 보장 필요

(양부남위원)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죄의 범위를 심각성과 중대성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